

현안분석 2011-12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

박 광 동 · 이 성 언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현안분석 2011-12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

박 광 동 · 이 성 언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 대상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Measures to Secure
International Reliability of Korea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Education and the
Promotion toward the Target Countries -

연구자 : 박광동(부연구위원)

Park, Kwang-Dong

이성언(전문연구원)

Lee, Sung-Un

2011. 12. 29.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법제도를 발전시켜왔음
- 우리 법제에 대한 계수를 원하는 체제전환국 등이 있을 정도의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낮은 편임
-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우리의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임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법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교류 차원의 법학교육 및 법제 홍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연구의 목적

-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및 홍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에 의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외국대상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 현 황

- 관계 기관들의 대상국 법학교육은 소위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이고, 또한 주로 단기의 제도연수 또는 위탁교육 등에 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① 대상국의 범위 문제, ② 법학교육시스템의 부재, ③ 대상국을 위한 우리 법학교재의 부족, ④ 우리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 ⑤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 ⑥ 법학교육 평가시스템의 미비, ⑦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의 미비

□ 대상국 법학교육 시스템 구축방안

○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

- 대상국 법제정보 오류 정비
-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응하는 교재 개발

○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 단기 교육 등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기존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정보의 공동이용
- 법학교육시스템을 통한 대상국에 대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을 추진

-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사업 시행
- 주요대상국에 한국법센터(가칭) 설립

□ 우리나라 법제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 선정 및 접근성 강화

- 대상기관 선정시 ① 대상기관의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여부, ② 접근의 용이성 여부, ③ 홍보효과의 전파성 정도 등을 고려

○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 ①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② 기관간 연계를 통한 홍보, ③ 마케팅 통한 홍보, ④ 법제관련 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한 홍보 등 복합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축

○ 대상국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홍보사업 시행

Ⅲ. 기대효과

□ 우리 법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제고 및 글로벌 스탠다드화

□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사업수행의 효율 증대

▶ 주제어 : 법학교육, 홍보, 법학교육시스템, 법제교류지원, 국제적 신뢰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In spite of the excellence of Korean legislation as some transition countries hope to be handed down it, the reliability to Korean legis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quite low.
- It result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Korean legis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sufficient promotion of the legislation.
- It is the time that requires the law education at the level of legislation exchange and the systematic researches on legislation promotion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Korean legisl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urpose of this study

- I would study the measures to enhance the national brand value by securing international reliability to Korean legislat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law education for the target count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omotion system.

II. Main Contents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law education related institutions in Korea targeting foreign countries

○ Status

- The law education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for the target countries is the legislation exchange work targeting so-called transition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and it is limited to the short term system training or commissioned education.

○ Problems

- ① The problem of the scope of target countries, ② The absence of law education system, ③ The lack of Korean law textbooks for target countries, ④ The lack of promotion concerning Korean legislation, ⑤ Low investment to law education, ⑥ Incomplete evaluation system of law education, ⑦ Imperfect cooperation system among relative organizations

The measures to establish the law education system of target countries

○ Consolidation of the basic data of the main task legislation

- Consolidating the legislation information of target countries
- Developing textbooks responding to the overall legal system of Korea

- Establishment / Operation of the short ter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target countries
 - Establishment / Operation and the common use of system information of the existing law education related institutions
 - Establishment / Operation of legislation supporting system for target countries through a law education system
- Promoting diffusion / establishment of the work scope of short term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of target countries
 - Implementing the works per stage such as ① 1st step (Foundation setting up stage)⇒ 2nd step (Diffusion stage)⇒ 3rd step (Settlement stage)
 - Establishing Korea Law Center (tentative name) in major target countries
- The measures to establish the promotion system of Korean legislation
 - Selecting the main promotion organization and reinforcing accessibility
 - When a target organization is selected, the following points are to be considered, ① Interest of the target organization in Korean legislation, ② Easy accessibility, ③ The degree of the communicability of promotional effect
 - Establishment / Operation of promotion system
 - Establishment of the complex promotion system such as ① Promotion through the use of media, ② Promotion through the con-

nections among organization, ③ Promotion through marketing, ④ Promotion through the own activities of legislation related organization

- Diffusion / Establishment of the scope of legislation promotion system of target countries

- Implementation of promotion works per each stage

III. Expected Effect

- Enhancement of the international reliability to the legislation of Korea and global standardization
- Increase of the efficiency of work performance of the law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 of target countries

▶▶ Key Words : law education, promotion, law education system, the legislation exchange, International Reliability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16
제 2 장 우리나라의 외국대상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19
제 1 절 현 황	19
제 2 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29
1. 대상국의 범위 문제	29
2. 법학교육시스템의 부재	30
3. 우리 법학교재의 부족	32
4. 우리 법학에 대한 홍보 부족	33
5.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	33
6. 법학교육 평가시스템의 미비	34
7.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의 미비	34
제 3 장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차원의 교육체계 구축 방안	37
제 1 절 추진 목표 및 체계	37
1. 추진 목표	37

2. 추진 체계	38
제 2 절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40
1. 데이터 정비기준 표준화로 자료 정확성 확보	40
2. 대상국 단기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45
3. 대상국 법학교육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50
제 3 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대상국 법학교육 방안	53
1. 한국법제연구원의 법학교육 필요성 및 경험	53
2. 한국법제연구원의 법학교육 수행 기반 검토	56
3. 추진 목표와 체계	57
4.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58
제 4 장 우리나라 법제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61
제 1 절 추진 목표 및 체계	61
1. 추진 목표	61
2. 추진 체계	62
제 2 절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64
1. 중점홍보 기관 선정	64
2.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65
3.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69
제 3 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홍보 방안	70
1. 중점홍보 기관 선정	70
2.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70
3.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71

제 5 장 결 론 73

참 고 문 헌 75

【참고자료】

서울법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법강의 개설 관련 자료 8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법교육과 법학교육에 구별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대상자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교육」이란 미국의 Law-Related Education(LRE)의 번역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미국에서 법교육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 법(형성)과정, 법제도, 이들의 기초를 확고히 하는 기본원칙과 가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하는 교육」(Law-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P.L.95-561)이라고 정의되고 있다.¹⁾ 이에 반하여 미국에서의 법학교육(Legal Education)은 로스쿨에서의 법률가양성 교육에 대한 것으로 구분되어 진다.²⁾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법학교육은 로스쿨에서의 법률가양성 교육뿐만 아니라, 법조인 혹은 법률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나, 법학 학위를 어떤 소정의 목적(정치, 학술, 경영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³⁾

이러한 법학교육에 대한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학에 대한 사회적인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⁴⁾ 즉 국내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에 의하여, 그리

1) <http://www.kanto-ba.org/sympo14/14-souron.htm>.

2) 법교육은 법조양성을 위한 법학교육 등과는 다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의 사람들이 대상인 것, 법률의 조문이나 제도를 기억하는 지식형의 교육이 아니고, 법이나 규정의 배경으로 있는 가치관이나 사법 제도의 기능, 의의를 생각하는 사고형의 교육인 것, 사회에 참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의식시키는 사회참가형의 교육인 것에 큰 특색이 있다[法教育研究会, 我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普及・発展を目指して, 法教育研究会, 2004, 2面].

3) http://ko.wikipedia.org/wiki/%EB%B2%95%ED%95%99_%EA%B5%90%EC%9C%A1.

4) 국제적으로도 법체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국내법과 국제법의 상호보완관계 형성, ② 공사법 구별의 무의미성, ③ 영미법과 대륙법의 상호

고 국외적으로는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약적인 사회적·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법제에 있어서도 급속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발맞추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제규범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우리 법제에 대한 계수를 원하는 체제전환국 등이 있을 정도로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⁵⁾,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우리의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법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교류 차원의 법학교육 및 국제적 홍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고, 또한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걸맞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제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는 그 인식이 미미한 실정이다.

접근성, ④ 국제적 통일 거래규범 형성, ⑤ 지역별 또는 대륙별 공동규범의 형성이 진행되고 있다[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6, 9-11면].

- 5) 법제교류지원 관련 이론 중 Subglobalization론은 우리나라는 법치에 의한 평화질서 확립,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세계화의 보편적 요소들을 모두 달성해 내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는 지역적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아시아에 몇 안 되는 Subglobalization의 중심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위에서 ① 정치적 측면에서 정치적 자유와 인권신장을 위한 역할, ② 경제적 측면에서 최빈국의 자원과 개발에 대한 지원, ③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문화의 중심역할, ④ 법제지원과 인권보장 활동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김유환,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사업의 의미와 과제”, 아시아에서의 법 발전과 한국의 역할, 아사아법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6, 2-4면].

이러한 경향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해외기업 진출시 분쟁에 대해서 대상국 기관이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중재계약 체결’에 의한 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한-미 FTA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도입은 우리 법제에 대한 미국의 이해 부족 및 우리나라 투자환경과 법제에 대한 홍보부족의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1] 미-호주 FTA 체결시 ISD 조항 미삽입 이유

미-호주 FTA 체결시 ISD 조항 미삽입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호주 FTA 체결시 ISD 조항 미삽입에 대하여 미국 기업은 미-호주간 FTA 체결시 미-호주 FTA에서 ISD 조항이 결여된 것이 동 협정의 큰 결점이라고 주장하였으나⁶⁾, 미-호주간 FTA 체결시 ISD 조항 미삽입에 대하여 ○ 미국 정부의 경우는 미국과 호주의 오랜 경제적 연대, 법전통의 동일, 상대국 시장에서 운영되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설명하였고⁷⁾, ○ 호주 정부의 경우 양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범위를 제공하는 견고하고 선진화된 국내 법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설명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에 대하여 외국 대상국 및 기관(이하 “대상국”) 등에 대한 법학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다.

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99, 101 (May 2004), <http://hotdocs.usitc.gov/docs/pubs/2104f/pub3697.pdf>.

7)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Australia FTA Summary of the Agreement (July 15, 2004), http://www.ustr.gov/Trade_Agreements/Bilateral/Australia_FTA/US-Australia_FTA_Summary_of_the_Agreement.html.

8) AUSTRALI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ADVANCING AUSTRALIAN INVESTMENT AND SERVICES EXPORTS 5 (2004), www.dfat.gov.au/trade/negotiations/us_fta/fact_sheets/Services.pdf.

제1장 서론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및 홍보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상국 법제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대상국 법학교육 및 홍보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상국에 대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구상하여 보고자 한다. 이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 목표 및 체계를 설정하고,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제시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여 보고자 한다.

제 2 장 우리나라의 외국대상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현 황

한국에서 대상국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관 중, 국가기관으로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부, 법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그 밖에 민간기관으로는 아시아법연구소, 한국무역협회,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국제개발협력학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이 주로 수행하는 법학교육은 소위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교류지원사업이고, 또한 주로 관계기관에 대한 연수 또는 위탁교육 등에 한정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상국에 대한 경쟁법 지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캄보디아·베트남을 중심으로 IT와 통신시장과 관련된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자문, 한국증권거래소의 캄보디아에 2010년까지 증권거래소를 세우고 증권감독원·증권회사의 관련 법률과 제도의 지원 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관계기관에 대한 연수 또는 위탁교육에 한정되어 있다.⁹⁾

이하에서는 주요기관에 대한 외국대상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9) 박광동, “韓國の法整備支援国に対する支援現況と課題”, 아시아 각국의 법정비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09.7, 38-42면.

(1) 대법원

대법원은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사법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국제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써 국제사법교류를 하고 있다. 즉, 그동안 대법원장의 사법외교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양국 사법부 수장의 상호방문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① 외국 법관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및 장학생 초청사업 운영, ② 외국 사법부와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축, ③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법협력 제공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활동 중에 외국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은 주로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 중에는 일본 정도에서 한일법관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민사집행사건의 최근 동향, 전자소송 및 전자법정의 현황과 전망, 사법행정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토론을 가지는 정도이다.¹⁰⁾

대법원의 법제교류 현황 및 홍보 ¹¹⁾				
□ 외국 사법부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현황				
연 도	성 명	자 격		
2010년	왕성권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2011년	호르헤 알베르토 리베라 아빌레스	온두라스 대법원장		
□ 외국 법관을 위한 한국사법제도 연수과정(2010)				
번호	국 명	단장/총방문자수	연수기간	공동주최 여부 /일정
1	카자흐스탄	대법원 판사/15	4.24.-5.9	KOICA/정규일정
2	파라과이	노동 항소법원 판사/13	6.15.-6.30.	KOICA/정규일정 등

10) <http://www.scourt.go.kr/news/ExchangeViewAction.work?gubun=18&seqnum=62>

11) 장민선, “대법원의 법학교육 및 홍보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

번호	국명	단장/총방문자수	연수기간	공동주최 여부 /일정
3	베트남	법관연수학교장/9	7.19.-7.30.	KOICA/정규일정 등
4	방글라데시	대법원장/12	8.30.-9.14.	KOICA/정규일정 등
5	다국적	요르단 법무부 암만 1심법원 부법원장 (총 10개국)/16	10.19.-11.3.	

국제회의 및 워크숍 개최 및 참가

○ 아·태 대법원장회의

- 제14차 회의 개최(2011. 6. 13. ~6. 15.) “21세기 사법의 현재와 미래”

○ 국제법률콜로키움

- 전문 법률분야에 관한 국제적 학술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법 교류를 확대하고 사법부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특정 주제로 개최

- 2010년 ‘전자소송의 국제적 동향’

- 2011년 ‘성폭력사건의 심리’

○ 한일법관 워크숍

- 2005년 대법원 주최로 제1회 워크숍 개최 후 한국과 일본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함

국내 사법제도의 홍보 방법

- 대법원 홍보 브로슈어 각국 언어로 제작하여 대법원장 및 고위법관의 해외 방문시 배포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인사의 외국 방문,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국제화 연수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외외빈방문 관리, MOU체결,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개최, 세계

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1차 워크숍 발표문, 2011.12.9. 요약 및 수정.

헌법재판소장회의 개최 등 외국 재판소와의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제교류 현황 ¹²⁾
<input type="checkbox"/>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제프 뮐너 주한 오스트리아대사 헌법재판소 방문 (2월5일)- 제7차 아시아헌법재판관회의 참가 (7월12일 - 7월15일)- 발레리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 일행 방문 (11월23일 - 11월26일)
<input type="checkbox"/>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브게니 탄체프 불가리아 헌법재판소장 방문 (9월22일 - 9월26일)- 제프리 미니어 미국 연방대법원장 자문관 방문 (10월8일 - 16일)- 러시아 헌법재판소 공식초청 방문 (10월26일 - 11월3일)

(3) 아시아법연구소

아시아법연구소는 아시아 여러 국가의 법률과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조사와 비교연구, 체제전환국의 법제교류지원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국제적인 교류의 활성화에 따르는 법률서비스의 지원, 법률가와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대한 지원과 협력,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법률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 장기적으로 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7년간의 공정거래법 집행노하우를 아시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

12) 윤혜란,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법학교육 및 홍보 현황 개관”,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1차 워크숍 발표문, 2011.12.9. 1-2면.

시해 왔다. 그리고 최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 경쟁당국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일본과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쟁법 집행 경험의 공유를 위한 기술지원과 직원교류, 집행동향 정보교환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제교류 현황 ¹³⁾
<p>□ 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독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독일) (2월8일) - 한·불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프랑스) (2월9일) - 한·미 경쟁정책협의회 개최 (프랑스) (2월10일) - OECD 경쟁위원회 참석 (프랑스) (2월15일 - 2월19일) - 제4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8월26일 - 8월27일) - 국제카르텔 현지설명회 (미국) (10월27일) <p>□ 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경쟁당국 조직설립 담당 과장 실무연수 (5월25일 - 5월26일) - 한·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9차 경쟁정책협의회 (10월31일) - 한·중 경쟁당국 북경에서 실무협의회 및 워크숍 (11월22일 - 11월24일)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을 중심으로 IT와 통신시장과 관련된 정책 및 법규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13) 윤혜란, 전개발표문, 5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법제교류 현황 ¹⁴⁾
<p>□ 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전략」 한·중 세미나 개최 (5월12일) - ISTIC(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KISDI 방문 및 교류협력회의 개최 (6월25일) - 오스트리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문 (10월12일) - 세계은행과 「몽골 브로드밴드 발전방향」 제시 (10월27일) - 「한국-월드뱅크-튀니지 컨퍼런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개최 (12월1일) - 「한국-월드뱅크-일본 전문가세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개최 (12월 8일 - 9일) - 「한국-세계은행-세르비아 워크숍: 모바일 브로드밴드 어플리케이션과 ICT 생태계」 개최 (12월 21일) <p>□ 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ICT) 장관 방문 (5월12일) - 라오스 우편통신청(NAPT)차관 방문 (5월12일) - 「2011 KISDI-정보통신정책학회 국제 세미나」 개최 (6월 24일) - 프랑스 방송 통신규제청(ARCEP) 대표단 방문 (6월28일) - 16차 TDAG 참여 「개도국 발전 위한 정책방향 및 전략」 논의 (6월29일 - 7월1일) - 캄보디아 전파관리정책 초청자문 개최 (8월29일) -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통신국 및 통신규제국 공무원 초청자문 실시 (8월 28일 - 9월2일) - 제21차 KISDI-SRPA/SRI 한·중 우정연구 교류협력 워크숍 개최 (9월4일 - 9일) - 미얀마 정보보호 정책 초청자문 실시 (11월 6일 - 12일)

(6) ADVOCATES KOREA

ADVOCATES KOREA는 종교단체NGO로써 아시아지역 법률가들의 한국 초청연수, 법제개혁세미나 개최, 해외 법률지도자 양성을 위한

14) 윤혜란, 전개발표문, 6-7면.

장학사업, 한국법률가의 해외파송, 아시아지역의 네트워크형성을 위한 ADVOCATES ASIA 대회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7)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글로벌네트워킹사업의 일환으로 외국공무원교육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 국제행정학회, 국제행정교육기관연합회 등을 단체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공무원교육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체 외국공무원교육사업,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한·ASEAN 협력사업 등이 있다. 이때 외국공무원교육과정의 중점교육방향은 ① 한국의 경제발전, 국토발전전략 등 국가발전 경험 소개, ②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정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소개, ③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을 통한 현장학습 등이다.¹⁵⁾

그리고 홍보방안으로 외국정부 교육훈련기관과의 양해각서(MOU)체결, 영문홍보책자 발간, 교육원 방문외국인사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영문홈페이지 및 수료생 DB관리 등 외국공무원교육과정 수료생 추후 지도 등을 하고 있다.¹⁶⁾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법제교류 현황 ¹⁷⁾
<input type="checkbox"/> 2011년 ○ 내부교육 - ASEAN공무원 인적자원개발과정 (3월16일 - 3월25일) - 브루나이고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4월5일 - 4월14일) - 제60기 말레이시아공무원과정 (5월11일 - 5월20일) - 제61기 말레이시아공무원과정 (7월19일 - 7월28일) - 일본공무원행정연수과정 (8월31일 - 9월5일)

15) <http://www.coti.go.kr/front/glb/FrontGlb.do?method=psp&pgCd=300301000>

16) <http://www.coti.go.kr/front/glb/FrontGlb.do?method=interchange&pgCd=300302000>

17) 윤혜란, 전개발표문, 4-5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법제교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제르바이잔고급공무원 행정발전과정 (9월20일 - 9월29일) - 러시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10월11일-10월21일) - 제62기 말레이시아고급공무원과정 (11월1일 - 11월11일) <p>○ 한국국제협력단(KOICA)위탁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라과이고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4월25일 - 4월29일) - 국제행정발전과정 : 세네갈,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자부티, 케냐, 카메룬, 라오스, 캄보디아,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5월24일 - 6월3일) - 국제교육협력발전과정 :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부탄, 세네갈, 케냐,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6월14일 - 6월24일) - 미얀마고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6월28일 - 7월8일) - 남아프리카공화국공무원 HRD전략과정 (11월22일 - 12월1일)

(8) 법무부

법무부는 크게 법무연수원에 의한 외국법조인과정과 국제법무과의 법률문화교류사업이 있다.

우선 법무연수원에 의한 외국법조인과정은 국제워크숍 과정으로 주로 전문 프로그램과 오리엔테이션, 사회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¹⁸⁾ 이 워크숍은 국제 워크숍의 목적은 형사 사법 시스템의 범죄 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현대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외국법조인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리고 국제법무과의 법률문화교류사업은 후진개발도상국가, 체제전환국 중인 구공산권 국가에 대하여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 법제정비지원을 목표로 하여, 우선적 지원 대상국은 아시아권 개발도상국들로 선정하였다.

18) <http://www.lrti.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3>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① 법무실무당국자 교류, ② 해외 한국법 특강, ③ 외국법조인 장학생 초청, ④ 법제정비 실무자 및 고위급 단기연수, ⑤ 법령입안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의 법제교류 현황 ¹⁹⁾
<p>□ 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시드 투습베코프 카자흐스탄 법무부장관 방문 (7월26일) -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이귀남 법무부장관 초청강연(8월27일) <p>□ 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상공회의소 초청 이귀남 법무부장관 만찬 강연회 (3월9일) - 이귀남 법무부장관 쿠웨이트 법무부 방문 (3월16일) - 이귀남 법무부장관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업무협약 (7월13일) - 주한 일본대사 방문 (9월9일) - 미 국제청 빅터 송(Victor Song)수사국장 방문 (10월7일) - APEC 국제 컨퍼런스 개최 (10월27일) - 하버드 로스쿨 석지영 교수 방문 (12월5일) - 세계한인변호사회 김홍기 명예회장 방문 (12월7일) - 안렁 왕(Yan Lung WONG) 홍콩 법무부장관 방문 (12월7일)

(9) 법제처

현재 법제처는 법령정보네트워크에 관련한 법제교류협력과를 중심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및 법제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간 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2011년 현재 아시아법제포럼 개최하였다.

19) 윤혜란, 전개발표문, 2면.

법제처의 법제교류 현황 ²⁰⁾
<p>□ 2010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장 일본 와세다 대학 특강 (4월20일 - 4월22일) - 주한 몽골대사 법제처 방문 (5월6일) - 법제처장 몽골 법무내무부 · 헌법재판소 등 방문 (6월29일 - 7월3일) - 법제처장 중국 법제판공실 등 방문 (9월2일 - 9월4일) <p>□ 201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아시아법제정보포럼 연락관 회의 개최 (5월4일) - 송따한, 중국 법제판공실 주임 법제처 등 방문 (9월5일 - 9월7일) - 한 따위엔, 중국인민대학교 법학원장 법제처 방문 (9월22일) - 수란짓 쉰 굽따, 방글라데시 국회 법사위원장 방문 (9월23일) - 감룰 이슬람 법무의회부 부장관 법제처 방문 (9월23일) - 도르지 오드바야르 몽골 국회 법사위원장 방문 (9월23일) -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1st Asian Forum of Legislative Information Affairs)개최 (11월10일)

(10)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추진 방향은 ODA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수원국(受援國) 필요에 따른 성과중심적 원조시행,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 프로그램 발전, 민간참여 확대, 비구속성 원조확대, 지원국가 및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를 들 수 있다. 본 단체에서는 ① 연수생초청사업, ② 프로젝트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 윤혜란, 전개발표문, 3-4면.

(11) 한국법제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입법평가지원시스템 및 우리 법제의 국제화를 위한 영문법령DB,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글로벌법제연구DB 등의 법제종합 공동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법 입문(Introduction to Korean Laws)을 독일어로 발간하였고, 영어로도 발간 할 예정이다.

제 2 절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상국의 범위 문제

우리나라의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주요 대상국은 아시아의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에 아프리카 지역으로 대상국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에 있어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닌 ODA에 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소위 선진국에 대한 우리 법제의 법학교육은 대부분 관련 기관의 전문가의 방문 및 간단한 토론 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²¹⁾

물론 이러한 아시아에 대상국을 집중시키는 것은 초기 우리 법제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신뢰성 검증 단계와 법제 확산에는 기여할 수 있다.²²⁾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상

21) 중국 정법대학이나 콜롬비아 로스쿨에 한국법률연구센터 등이 개소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22)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동북아의 허브, 동북아의 중심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개혁지원사업은 동북아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동북아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몽골 등 대부분 법제개혁지원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필자는 국가적 세계화전략 역시 동북아가 아닌 아시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법제개혁지원사업의 초

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상국 확산에 있어서 첫단계에서는 대상국에 우리 법학교육을 하였을 경우에 국제적 신뢰도에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거점지점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²³⁾

이러한 거점지점 방식이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져 다른 대상국에서도 관심을 보일 때 전방위적인 법학교육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법학교육시스템의 부재

우리나라의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시스템이 아직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관계 기관들에게 오는 대상국이 주로 우리나라 관계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로 해서 방문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 경제체제나 행정체제를 배우려고 하는 중에 우리나라의 특정 법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경우는 있다.²⁴⁾ 이때에도 주로 KOICA 등

점은 범아시아지역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유환, “제2절 일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73면].

23) 실시기관별로 다른 협력분야나 사업운영체제에 근거하여 집중 국가를 지정할 경우에 사업이 중복되거나 필요한 지원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24) KOICA의 경우에 교육 ODA의 기본방향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제도정책, 인력양성, 시설을 중점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기초교육, 아시아 및 중남미는 직업훈련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대하여 기본 목표로 첫째 기초교육기회 확대, 둘째 직업훈련기반구축, 셋째 고등교육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목표로 첫째 기초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①기초교육시설 확충, ②교수·학습의 질적 개선, ③교육정책·제도 수립을, 둘째 직업훈련기반구축에 대한 세부목표로 ①기능인력 양성, ②양질의 직업훈련 제공, ③자격검정제도 수립, 셋째 고등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목표로는 ①교육시설 확충, ②고등교육기술 전수 등을 제시하고 있다[<http://www.koica.go.kr/>].

을 통하여 관계 기관에 단기 연수 정도로 해서 간단한 기관 현황과 특정 제도와 법률 근거 제시 등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기관 등에 의한 국제교류차원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의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외국공무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국토발전전략 등 국가발전 경험의 소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정 개혁 등 국가경쟁력 강화전략 소개, 유관기관 방문 및 산업시찰을 통한 현장학습 등에 대한 교육에 그치고 있고, 전문적인 법학교육에 대한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서울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법강의가 개설되어 있기는 하나[참고자료 참조],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대상 법교육 및 법학교육에서도 이는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 국내 외국인의 국내법 교육 실태²⁵⁾

대 상	교육기관
내국인	일반사회 과목내,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외국인	없음
유학생	없음
다문화 가정	법무부지원 단체
탈북자	법무부 지원 단체, 사회단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와 법제는 같은 테두리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제도는 상시

25) 김현수,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과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2차 워크숍 발표문(ppt자료), 2011.12.16. 6면.

적으로 변화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는 우리나라 사회·문화적인 시대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상응하기 때문에 제도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가 우선 대상국에 유입되어 우리 법제가 후에 따라갈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점과 우리 법제에 대한 대상국의 인식이 곧 제도의 고착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 법학교재의 부족

우리나라의 법학을 대상국에 교육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법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국에 제공할 수 있는 법학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법학교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간략한 프리젠테이션 수준의 자료만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 법제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접근시에 간략한 기관 소개 및 업무내용에 대한 부분만이 존재하거나 그 밖에 우리나라 영문법률 정도를 대상국에서 접근할 정도의 자료 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제공되는 영문법률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많은 오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개인이 우리나라 일부 법제에 대한 소개를 목표로 발간한 서적은 존재한다.²⁶⁾ 이러한 교재는 우리나라 특정한 법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분야에 대한 우리 법제에 대한 소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법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특별분야의 법학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26) 예컨대 최근(2010년-2011년) 한국법 관련 저서로서는 Korean Business Law: The Legal Landscape and Beyond by Jasper S. Kim (Jan 1, 2010), Litigation in Korea (Elgar Korean Law) by Kuk Cho (Jun 2010),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Elgar Korean Law series) by Seung Wha Chang and Won-Mog Choi (Apr 11, 2011) 등이 있다.

최근에 기관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법학교육을 위한 저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Introduction to Korean Laws」를 출간하였고, 이 밖에도 녹색성장 관련 법제 및 다양한 법제에 대한 법학교육저서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4. 우리 법학에 대한 홍보 부족

우리나라의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은 주로 홍보방안으로써 주로 첫째 외국정부 교육훈련기관과의 양해각서(MOU)체결, 둘째 영문홍보책자 발간, 셋째 교육원 방문외국인사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넷째 영문홈페이지 및 수료생 DB관리 등에 그치고 있다. 이도 주로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의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우리 법학에 대한 홍보는 극히 미약하고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진국이나 국제기구 등을 위한 우리 법제나 법학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고,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관계 기관 등에 의한 우리 법제에 대한 홍보방식이 너무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접근성 방안 부족 및 수동적 방식으로의 운영은 우리 법제의 우수성 및 법제 관련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국의 우리 법제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방식의 구상 및 적극적 홍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5.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

우리나라의 대상국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법학교육에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보다는 KOICA 등과 같은

지원기관에 의해서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부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선진국에 대한 우리 법학의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하여서는 그 비용투자가 적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직업훈련분야나 IT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교육이 일정한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법학교육의 단기적·일시적 사업인 프로젝트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여 효과적인 우리 법학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대상국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마련하고, 또한 현재 정부에서도 일정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부여하는 방식의 고려가 필요하다.

6. 법학교육 평가시스템의 미비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은 없다. 그러나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사후에 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이때 그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방법의 통일성과 구체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반응평가 결과, 학습평가 결과 등의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다.

7.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의 미비

현재 외국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이를 중심점에서 네트워크를 할 만한 허브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로 운영을 하거나 또는 대학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기관에 따라서는 대상국에 한국법 교육센터 등을 두고 본격적인 한국법 교육에 나서려고 하고 있다.²⁷⁾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한국법 교육은 주로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것이고, 선진국에 대한 우리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법학교육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별교육에 그치고 민간분야와의 협력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즉, 일부 기관에서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시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민간기관의 법학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인재풀이 구축되지 못하여 한정된 인원이 개괄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간의 인적 네트워크 공유 및 인력풀 공유를 통하여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재개발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우선 공공 집행주체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연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27) 몽골의 한국법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국법교육센터(국민대학교 사업 운영)는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한국교육개발 협력사업인 ‘몽골 한국법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다[<http://news.nate.com/view/20111129n29253>].

제 3 장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차원의 교육체계 구축 방안

제 1 절 추진 목표 및 체계

1. 추진 목표

우리나라에서 법제교류차원에서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의 시행시에 고려해야 할 추진 목적은 대상국에 대한 교육을 통한 우리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 법제의 국제적 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1] 추진 목표



2. 추진 체계

(1)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대상국의 법체계 및 법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상국의 법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 및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현행 외국어로 구성된 법률용어사전 등이 정부부처 및 대학교를 포함한 민간기관 등에서 발간되고 있으나²⁸⁾, 법률용어에 대한 번역오류 및 같은 용어에 대해서도 사전마다 다른 표현을 쓰는 것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즉, 우리 법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된 외국어법률용어사전에 대한 공신력을 갖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법제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대상국에 대한 법제정보의 번역 오류 및 최신성이 없는 자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영어로 된 대상국 법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이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이에 대해 대상국의 모든 법제 정보를 전부 수집 및 정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대상국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된 법제정보 및 법률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이에 대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28) 대표적으로 대법원(외국법률용어집), 법제처(법률용어한영사전), 한국법제연구원(영문법령용어집, 영어-한국어-몽골어 법률용어사전, 영-한-몽-러-독 법률용어사전) 등.

(2)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각 기관에 따라 각각의 방식으로 법학교육을 수행한다면 대상국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학교육의 수행 보다는 중복적이고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법학교육이 수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초청연구원 또는 연수자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학교육에 있어서는 아직은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개개인의 교수 및 연구자나 법학 비전문가 기관에 의한 일반적인 교육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에 있어서는 우선 단기 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후, 향후 이를 확대하여 장기교육시스템의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대상국 법학교육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대상국에 대한 교육 업무 영역의 확산 및 구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상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법학교육에 대한 홍보 및 이를 통한 단기 법학교육업무의 수행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과연 법학교육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생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경제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의 수행은 오히려 법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와서 그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단계별 확산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때 단계별이라고 할 때 무엇에 대한 단계별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중점 국가단계별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영미 등으로 확산하는 방안의 구상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현재 KOICA를 연계로 하여 관련 법학교육기관에서 체제전환국 및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관련 기관에서는 다방면으로 점차 국제적으로 그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의 구상이 필요하다.

②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법학교육기관과의 단계별 연계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KOICA와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관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상국의 신뢰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법학교육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래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도 동시에 구상할 수 있다.

제 2 절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1. 데이터 정비기준 표준화로 자료 정확성 확보

(1) 대상국 법제정보 오류 정비

대상국에 대한 법제 데이터 및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대상국 법학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효율성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표3] 데이터 표준화

구 분	데이터 표준화 내용
대상국	①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소개된 법제정보 정리 및 오류 분석
	② 대상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법제정보 정리 및 오류 분석
우리나라	① 우리나라의 외국어(영어) 법률용어사전에 대한 표준화 작업
	② 우리나라 영문법률에 대한 번역 오류 유형 분석 및 정비기준 표준화
	③ 우리나라에 소개된 대상국 법률에 대한 상호 불일치 내용 분석 및 누락내용에 대한 개선

이때 대상국 법제정보의 오류정비의 추진에 있어서 자체오류와 상호오류로 구분하여 오류정비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표4] 오류정비 방안

오류 내용	오류정비 방안
자체오류	대상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에 소개된 법제정보 중심의 정보오류에 대해서 직접 정비 수행
상호오류	대상국가에 소개된 우리 법제정보에 대한 상호 오류를 추출하여 정비

이러한 오류 정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외국어에 의한 법률용어 오류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에 대한 오류 분석 및 영문 법률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영문법률자료의 제공은 법제처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문법률의 표준화 작업에 있

어서 중요한 영문법률의 대비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JaLii(법정보연구센터)중심 프로젝트인 디지털STD(표준번역사전)(<http://jalii.law.nagoya-u.ac.jp/enindex>)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5] 디지털STD 모형

Entry	Translation
委託者指図型投資信託	investment trust with settlor's instructions
委託者非指図型投資信託	investment trust without settlor's instructions
一般財団法人	general incorporated foundation
医薬部外品	quasi-pharmaceutical products
介護保険	nursing care insurance
介護保険施設	nursing care insurance facilities
下級審	lower instance court
加算税	penalty tax
割賦販売	installment sales
機関訴訟	interagency action
企業組合	enterprise cooperatives
基準外国為替相場	base exchange rate
忌避する(検査を)	evade (inspection)
義務教育	compulsory education
義務付けの訴え	mandamus action
協業組合	cooperative partnerships
業務規程	operational rules
区分経理	separate accounting
検案	postmortem examination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디지털STD(표준번역사전)와 관련한 사업의 수행을 통한 외국어 법률용어 표준화 및 오류 수정에 대한 방안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체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면 일본과의 연계를 통한 사업수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외국어로 된 우리 법제에 대한 자료의 오류분석 및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우리 법제에 대한 교육자료 등은 대상국에서는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상황에서 기관별로 서로 상반된 내용이나 내용상의 오류가 있는 것을 제공한다면 우리 법제의 신뢰성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응하는 교재 개발

효율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와 법을 쉽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전문적 지식을 구축할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재개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즉, 종래 교재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종이책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교재 및 디지털북을 겸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1) 교재의 구성

법학교육을 위한 교재 구성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우리나라 법학의 이해를 위한 사전기반지식의 구축 문제일 것이다. 즉 법학도 우리 사회상을 반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개론서가 필요할 것이다. 이때 고려할 점은 현재 우리나라 법학교육에서 쓰이는 형태의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기본법과 개별법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행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4년제 대학 등 주로 유학생의 교육목적에서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상국 법학전문가 등에 대한 법학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 보다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 법제에 대한 기본 교재(개론서)+중점 주제 교재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표6] 교재의 구성내용

구 성	구성내용
기본 교재	한국법 역사, 한국의 법체계, 한국법 입법(공법+사법), 비교법 개론
중점주제 교재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해설, 사법제도론 등

이때 기본 교재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분량에서도 함축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되도록 도표화하여 이해의 편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만화 또는 영상을 이용한 교육 교재 개발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점주제 교재에서는 한가지 주제에 대해 입법배경 및 비교법적이고 국제적 측면에서의 비교 분석이 들어간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법제에 대한 대상국의 도입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만화 또는 영상을 이용한 교육 교재 개발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재형태의 다양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재는 종이교재 형태를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교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오디오교재, 영상교재, 전자교재 등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종이교재 형태가 가장 친숙하고 가장 명확한 방법일 수 있으나, 대상국에 대한 거리적 제약 및 종이라는 소재에 의한 다양한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이교재와 더불어 오디오교재, 영상교재, 전자교재 등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3) 교재내용 표현의 다양화

일반적으로 법학교재는 서술형의 설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교재는 시간을 들여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 법학교재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내용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즉 설명형이 아닌 영화나 드라마 등을 차용한 형태의 교재개발이나 만화 등을 활용한 시청각을 강조한 교재의 개발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통해 대상국의 수강자들에게 이해의 편의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대상국 단기 교육시스템 구축·운영

(1) 대상국 법학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1) 단기 교육 등 프로그램 구축·운영

우선 단기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문별 준비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과제에서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교육의 효과 및 평가 부분과 홍보 및 이와 관련한 피드백의 문제이다.

첫째 법학교육을 위한 부문별 준비과제는 아래와 같다.

[표7] 부문별 준비과제²⁹⁾

부 문	준 비 과 제
1. 비전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법학교육 수요(필요성) 조사 ◦ 법학교육의 목표 및 비전 수립 ◦ 법학교육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판단
2.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적정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지원 기관 및 지원인력의 인식 및 지원수준 제고 ◦ 새로운 시도 및 기획 아이디어 등 교육계획의 참신성 추구
3. 프로그램 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한 교육시설, 장비, 투입예산의 확보 ◦ 교육담당 전문(전담)· 지원인력의 역할 설정과 배정 ◦ 교육 전후 효과적인 홍보전략 및 방법 모색
4.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방법의 적정성 판단 ◦ 교육 프로그램 결과도출 및 평가방법 설정 ◦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대한 공유 및 피드백 방안 강구
5. 국제 법제연구 및 정책개발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법제정책 내용 반영 비율 설정 ◦ 교육결과의 실제적 현실 전이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교육 이후 관련 법제정보 제공 방법 강구

둘째 법학교육 관련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8] 교육 평가도구 개발기준³⁰⁾

수 준	질 문	필요한 정보 형태
반 응 평 가	교육에 대한 참가자의 만족감은 어느 정도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대상자의 기대 ◦ 교육 참가자의 반응에 대한 관찰자의 평가 ◦ 교육프로그램이 참가자의 필요(수요성)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관리자의 의견

29)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0, 59-60면.

30) 박광동, 전게서, 82면; 에듀포넷(주), 교육훈련실무핸드북, 2004, 50면.

수 준	질 문	필요한 정보 형태
학 습 평 가	교육에서 참가자는 무엇을 배웠는가?	◦ 교육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참가자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았는지를 측정
직 무 행 동 평 가	참가자가 배운 것을 직무에 행동으로 변화시켰는가?	◦ 참가자, 동료, 관리자, 고객의 종합적인 평가로 학습자가 훈련이후에 직무행동변화가 나타났는지 평가

[표9] 학습평가의 방법³¹⁾

구 분	내 용
OX식	맞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의 기호를 하는 방법
선다법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문항과 여기에 대한 해답지를 4~5개 준비하고 그 중의 하나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 되도록 작성함.
조합법	어떤 현상과 그것에 대응하는 원리, 원칙 등 어떤 결과와 원인 등을 조합 시키는 문제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법
완성법	문장의 일부나 키워드가 되는 용어를 감추어 공백으로 만들어 참가자에게 기입하게 하거나 별도로 준비한 문장이나 용어 중에서 선택케 하는 방법
순서 나열법	시대, 연대, 고난도, 중요도 등 주제가 되는 기준에 따라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 몇 개의 항목을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방법
정정법	문장을 제시하고 그 중에 잘못된 부분에 밑줄을 치고 올바른 것으로 정정케 하거나 미리 밑줄을 친 곳을 올바른 것으로 정정케 하는 방법
논문 작성법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논문과제를 제시하거나 자유로이 과제를 선정케 하여 논문을 작성케 하는 방법
면접법	교육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 참가자를 면접하고 주요 교육요점에 관해 질문하여 이해정도나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31) 박광동, 전게서, 84면; 에듀포넷(주), 전게서, 53-54면.

구 분	내 용
실기 테스트법	기능에 관해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방법
행동 측정표	참가자가 가장 바람직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은 표를 관찰자가 가지고 있고, 그 표에 의해 한 가지씩 점검을 해 나가는 방식

이러한 법학교육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 적절성,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초기단계에는 시행기관에 평가로 인한 과도한 행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업무 지원 및 관련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평가, 참여형 평가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인다.³²⁾

2) 기존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정보의 공동이용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시스템의 구축에서 기존 관련 기관의 법학교육시스템의 연계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법무연수원의 외국법조인과정과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국공무원교육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하고, 그 밖에 교육별 목표에 따라 각 기관에서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법제처의 경우에 법제교육포털(<http://edu.klaw.go.kr/IntroInfoR.do#>)을 활용하여 이를 대상국에 관한 법학교육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³³⁾ 그리고 법학이론과 관련하여서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론적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시키게 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32) 박소영, 교육ODA,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9.6, 51면.

33)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네트워크, ALIN(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글로벌법제연구 DB를 연계한 한국법제교육 ON-LINE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결국 기존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법학교육시스템을 통한 대상국에 대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법학교육시 고려해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대상국에서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물론 법학교육이 모두 대상국의 입법지원요청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상국에서 입법지원을 요청받는 경우를 대비한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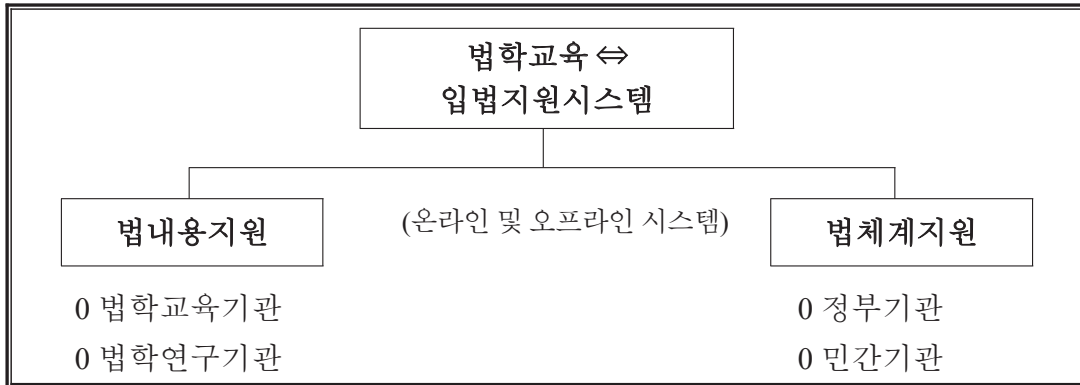
이때 입법지원에는 첫째 개별 법률에 대한 입법내용에 대한 지원과 둘째 입법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입법내용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개별 전문기관에서 입법내용을 지원해 주고 이를 대상국에 교육시키는 것에는 관련 전문 법학교육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입법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현재 입법체계와 관련한 정부기관(예: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 연구기관(예: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련 학회(예: 입법학회, 입법정책학회 등)와의 연계를 통한 입법체계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한단계 더 나아가 입법지원을 통한 법학교육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법학교육과 입법지원 상호간 연계를 통한 법학교육방안의 구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법학교육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때의 법학교육전문가는 우리 법제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대상국가나 기관의 문화적인 이해까지 가능한 단계에 이른 정도의 인력일 필요가 있다.³⁴⁾

34) 김진, “대한지적공사의 대상국 법학교육 및 홍보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2차 워크숍 발표문(ppt 자료), 2011.12.16., 14면.

[그림2]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모델



3. 대상국 법학교육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1) 단계별 사업 시행

1) 1단계(기반정립단계)

1단계로 국내 정부기관과 MOU체결된 대상국과 KOICA와 연계된 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법학교육 수요조사 및 우리나라에서 파악한 우리나라의 선진적 법제에 대한 법학교육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중점 대상국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시스템구축하는 단계를 말한다.

2) 2단계(확산단계)

1단계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정착단계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공공기관과 MOU체결된 대상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공공기관과 MOU체결된 대상국을 2단계로 한 것은 1단계의 정부기관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3단계(정착단계)

2단계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정착단계를 시도하면서, 국내외 민간 기관 대상 수요조사에 따른 법학교육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인 우리나라 법제의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이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2) 주요대상국에 한국법센터(가칭) 설립

단계별 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것은 대상국에 가칭 「한국법센터」를 두어 우리 법학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주로 대학과 연계하여 몇 개 국가에서 한국법센터가 개소되었지만³⁵⁾,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 고려할 점은 대학에 한국법센터를 연계시키는 방안 보다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한국법센터의 개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학교육 대상의 확대와 성과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한국법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법센터를 거쳐간 수강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국법센터에서 일정 기간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들에게 지속적인 한국법 정보 제공 및 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법센터에서 일정 기간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전문직에

35)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과 몽골국립대, 중국 정법대학 등에 한국법센터가 개소된 상황이다.

종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우리 법제의 세계화에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둘째, 한국법센터에서는 우수한 법학교육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우선 정착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선발된 우수한 법학교육인력을 바탕으로 대상국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점차적으로 한국법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국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여 대상국에 우리나라 법학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법센터의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10] 한국법센터 조직 구성 방안

	한국법센터 조직 구성 방안
전담 TFT 구성 및 운영 (일시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상국 전문가로 구성된 TFT를 일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 ○ TFT 구성원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 강연자, 연구자, 홍보지원자로 구성 - 한국법센터에서 행정직 및 강연자를 구성하고, 연구자는 연구부서에서, 홍보지원자는 기획조정실이 담당 - TFT의 소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TFT 강연자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에 대한 법제적 관심 및 선행지식이 갖추어진 자 - 대상국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법제 전문적 지식이 갖추어진 자 - 대상국 언어 또는 영어를 통하여 대상국 수강자 또는 연수자에게 이해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자 ○ 자문조직 및 전문가 풀(POOL)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분야의 법제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조직 및 강연자 POOL 활용 - 관련 협력기관의 전문 인력 적극 활용

	한국법센터 조직 구성 방안
전담 센터 구성 방안 (상용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센터의 설치 ○ 센터설치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직, 강연자, 연구자, 홍보지원자로 구성 - 독립 센터의 설치시 소속에 대한 문제 검토 필요 ○ 강연자 고려 사항(위와 동일) ○ 자문조직 및 전문가 풀(POOL)활용(위와 동일)

제 3 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대상국 법학교육 방안

1. 한국법제연구원의 법학교육 필요성 및 경험

(1) 필요성

대상국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유일하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정책에 대한 입법평가지원시스템 및 우리 법제의 국제화를 위한 영문법령DB,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글로벌법제연구DB 등의 법제종합 공동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종합시스템을 이용한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은 우리 법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2) 경 험

한국법제연구원은 외국에 대한 지속적인 단기교육 및 연수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는데,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 현재까지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단기교육 및 연수를 수행하였다.

□ 법제연수		
외국법제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한·우즈베크 법제정보시스템 협력을 위한 실무연수 및 학술회의	○ 일 시: 2009년 8월 4일(화) - 8월 7일(금) ○ 연수명: 한·우즈베크 법제정보시스템의 현황과 협력방안 ○ 참여기관: 법제처, 대법원, 국회 ○ 연수자: 법무부장관 외 7인
	몽골 사법관계자 국내연수 프로그램	○ 일 시: 2009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 연수명: 몽골 법제실무연수 ○ 참여기관: - 몽골측: 국회, 법원(대법원 포함), 변호사협회, 국립법률센터 - 한국측: 대법원, 변호사협회 ○ 연수자: 몽골법제전문가 11인
	몽골 법제실무자 연수	○ 일 시: 2008. 6. 10(화) 10:00~17:00 ○ 주 제: 한국과 몽골의 법제실무- 그 절차와 실제 ○ 장 소: 몽골 국립법률센터 회의실 ○ 참 석: - 몽골측: 국립법률센터, 내무법무부, 헌법재판 소, 국회, 몽골국립대 법대 관계자 등 약 30명 - 한국측: 법제연구원(3), 법제처(1), 법무부(1), 국회(1), 헌법재판소(1), 학계(1)
<p>※ 외국법제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p> <p>① 몽골의 경우 상호 연수 교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국내기관과 몽골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였으며,</p> <p>②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장관이 직접 연구원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대한 우수성 소개 및 관계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p>		

법령집 발간 및 DB화 지원

법률관리 지원사업	○ 일 시: 2006년 - 2008년 ○ 몽골·카자흐스탄 법령집 발간 협조 - 법령집 관련 정보제공 및 가제식 법령집 발간 실무 협조
	○ 일 시: 2008년 - 2010년 12월 ○ 한국·몽골·영문 법령용어집 발간 및 개정 ○ 참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몽골국립법률센터
	○ 일 시: 2010년 4월 - 2011년 3월 ○ 영어-한국어-몽골어-러시아어-독일어 법률용어사전 ○ 참가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몽골국립법률센터몽골

※ 법령집 발간 및 DB화 지원을 수행하여

- ① 몽골·카자흐스탄에 법령집 관련 정보제공 및 가제식 법령집 발간 지원을 하여, 지속적 지원을 요청받은 상황임. 이를 통해 몽골·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
- ②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하여 몽골 등에 사전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우리 법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내의 관계기관에게 몽골 등에 대한 법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함.

법제협력연구

법제 연구지원	○ 일 시: 2008년 1월-12월 ○ 한국법제연구보고서 발간 (2건) - 주 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제도 비교 책임자: Andy Omara - 주 제: 한국과 몽골의 저장권 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책임자: Bayar Purevdorj
	○ 일 시: 2010년 2월-8월(예정) ○ 한국법제연구보고서 발간 (2건) - 주 제: 한-베트남 FTA를 위한 법적 과제 연구기관: 베트남 국가와 법연구소 - 주 제: ALIN회원기관간 공동연구 책임자: ALIN회원기관

※ 법제협력연구를 수행하여

- ① 현재 민법 관련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몽골의 법제전문가의 국내 연수 및 공동연구를 통해 몽골에 대한 우리 법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 민법이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는 계기가 됨.
- ②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헌법전문가의 국내 연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헌법재판소 제도 개혁에 우리 헌법재판소제도가 참고자료로서 활용되는 계기가 됨.

2. 한국법제연구원의 법학교육 수행 기반 검토

(1) 가능성

한국법제연구원은 대상국에 대한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한국법제연구원은 대상국의 단기교육 등의 수요(예: 녹색성장법제 등) 및 우리나라 법률의 영문화(법령영역센터)와 단기교육 등의 경험이라는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대상국에 대한 단기법학교육시 수행상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³⁶⁾ 그리고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교재로서 한국법 입문(Introduction to Korean Laws)(독일어, 영어)을 발간(예정)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인적 자원에 있어서도 다른 법제 기관과는 달리 다양한 법제 분야 및 법학 관련 전문 어학능력을 가진 인재를 다수 확보(영미, 일본, 중국, 유럽 등의 박사학위자 등)하고 있으며, 다양한 외국 대상 법제 분야의 풍부한 외부 전문가 pool을 가지고 있다.

(2) 문제점

첫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등에 대한 예산의 제한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36) 예컨대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0.

서는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적절한 예산 배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법제연구원 특성상 법학교육 등에 대한 행정상의 제한이 있으며, 연구원이 교육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경험 및 제반적인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한국법제연구원에 대한 교육기능의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에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관계상 단기교육 및 연수에 대한 기능부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추진 목표와 체계

(1) 추진 목표

한국법제연구원 외국 대상 단기 교육 및 연수 수행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추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2) 추진체계

첫째,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로서 대상국 단기 교육시행 및 연수를 위해, 기존 한국법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대상국 법률자료의 정확성 확보 등을 통한 기초자료 사전 정비 실시한다.

둘째,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으로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외국에 대한 우리 법제의 우수성 인식 확산의 활성화 및 실질화를 위하여 단기 교육 등 시스템 구축·운영한다.

셋째,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으로서 대상국 단기 교육 등 시스템 업무영역별로 확산·구축하고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한다.

넷째, 한국법제연구원의 대상국 단기 교육 등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시스템을 구축한다.

4.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1)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

첫째 중점 과제 법제정보 오류 정비로서 한국법제연구원 발간 법률용어사전 및 영문법령DB 등을 중심으로 우리 법률 번역 오류유형을 분석하여 기초자료 정비의 표준화하여 ‘자체오류’, ‘상호오류’ 등으로 구분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대상국 중점 과제 및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응하는 교재 개발로서 현행 한국법제연구원의 한국법 입문이라는 한국법 총론 교재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해설, 비교법개론, 근대법개론, 사법제도론, 행정법 등의 각론적 교재의 구축이 필요하다.

(2)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한국법제연구원은 대상국에 대한 단기 법제교육 등을 맞춤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교육 등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와 평가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통된 단기교육 콘텐츠와 대상국 요청의 개별적 콘텐츠 개발을 추진(예: 한국 녹색성장법제의 이해 등)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단기 교육 등 시스템 정보 기반의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운영하기 위한 관계 기관별 접근 가능한 대상국 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지원을 위한 단기교육 정보기반의 ‘단기 교육 등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네트워크, ALIN(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 글로벌법제연구 DB를 연계한 한국법제교육 ON-LINE 네트워크 구축도 고려할 수 있다.

(3)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3단계 사업 시행 방안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 계	내 용
1단계	연구원 MOU체결 기관 및 국내외 정부기관 대상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국(연구원+KOICA 중심+국내외 정부기관)
2단계	연구원 MOU체결 기관 및 국내외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대상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국 확대(1단계 대상국+공공기관 중심)
3단계	ALIN 회원국 및 국내외 정부기관과 국내외 민간기관 대상 수요 조사에 따른 대상국 확대(3단계 대상국+민간기관 중심)

제 4 장 우리나라 법제 홍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 1 절 추진 목표 및 체계

1. 추진 목표

홍보란 PR(public relations), Publicity, Promotion, 그리고 대민관계를 강조하는 CR(community relations) 등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홍보는 경영자에게 다양한 공중의 의견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중의 의견을 토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상담하는 것이며, 홍보업무는 조직과 공중 사이의 사장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³⁷⁾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는 조직경영에서의 홍보의 개념을 법제에 적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법제를 이용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제교류차원에서 외국대상국에 대한 법제홍보를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때 추진 목적은 외국대상국에 대한 우리 법제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우리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제고이고 이를 통하여 “우리 법제의 국제적 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7) 조찬식, “공공도서관의 홍보에 관한 일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제4호, 한국비블리아학회, 2010.12, 7면.

[그림3] 추진 목표



2. 추진 체계

(1)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 선정 및 접근성 강화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홍보대상 기관의 선정문제이다.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대상기관 없이 광범위하게 우리나라 법제를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자체에서의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법제를 대상국에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방안으로서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법제를 홍보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나라 법제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관선정

의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초기 우리나라 법제의 홍보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자칫 홍보의 편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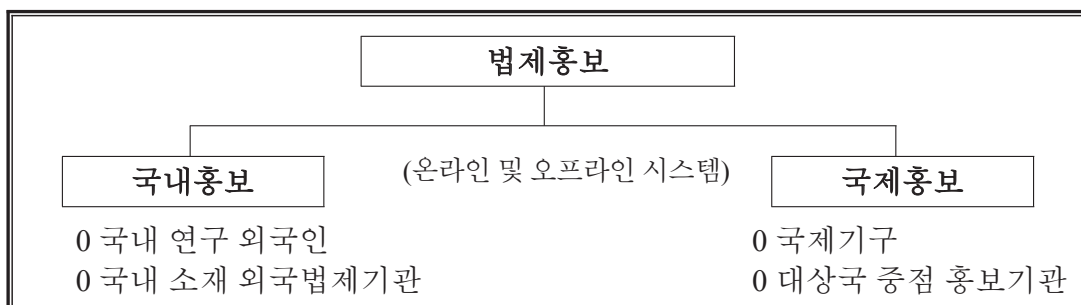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 선정시에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방안의 구상이 필요하다.

(2)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대상국에 대한 법제홍보 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각 기관에 따라 각각의 방식으로 법제홍보를 수행한다면 외국대상국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제홍보의 수행 보다는 중복적이고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법제홍보가 수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법제 관련 정부기관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MOU체결 및 외국 기관이나 국내 연수자 등을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법제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제홍보에 있어서는 아직은 대상국에 대한 법제홍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고 일부 기관에서 주로 MOU체결 및 외국 기관에 간단한 이메일링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간략한 내용의 홍보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법제홍보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래 오프라인상의 홍보방안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방안의 구상도 필요할 것이다.



(3) 대상국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홍보 영역의 확산 및 구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을 선정하여 우리나라 법제를 홍보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법제홍보기관과의 단계별 연계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예컨대 KOICA와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으로 법제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관 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대상국의 신뢰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법제홍보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래 온라인 네트워크도 동일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제 2 절 전략적 중점 추진과제

1. 중점홍보 기관 선정

우리나라 법제홍보시 가장 우선 고려할 점은 중점홍보 기관의 선정 문제이다. 대상국별 중점홍보기관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의 단기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점홍보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준은 첫째 대상기관의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여부, 둘째 접근의 용이성 여부, 셋째 홍보효과의 전파성 정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대상기관의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여부는 현재 대상국 법제 관련 기관 중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에 관심이 있는 곳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선정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법제홍보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접근의 용이성 여부는 처음에 대상기관에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관에서 홍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절차가 있는 경우 보다는 되도록 우리 법제의 홍보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우선 선정하고, 향후에 점차적으로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홍보효과의 전파성 정도이다. 즉 대상기관에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를 하였을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대상기관과 관련한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상기관 선정시에는 그 전파성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상국가별 홍보방안과 더불어 같이 수행하여야 할 영역이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방안이다. 우선 국제기구 자체의 선정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기구의 선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한 법제에 대한 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³⁸⁾

2.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1)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법제홍보방법에는 출판물, 시청각자료, 뉴미디어 등의 매체활용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방법은 그 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내

38) 우리나라 보고서 및 자료를 OECD홈페이지의 우리나라 부분(http://www.oecd.org/findDocument/0,3770,en_33873108_33873555_1_119684_1_1_1,00.html)에 올릴수 있다.

용과 홍보주체도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11]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³⁹⁾

매체유형	유 형
출판물	연차보고서, 핸드북, 연구보고서, 서목, 뉴스레터, 팸플렛, 리플릿 등
시청각자료	포스터, 게시판, 전시 등
뉴미디어	웹페이지, CD, 동영상 제작 등

(2) 기관간 연계를 통한 홍보

우리나라 법제홍보기관과 연계한 다른 대상국 기관과 연계(예: MOU 체결 등)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를 홍보하고, 중요한 정보를 상호교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관간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일정한 연대의식을 발휘하게 할 수 있어 홍보에 효과적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일정한 범주에서의 홍보방법에는 적절하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제홍보기관이 대상국 등의 기관과의 연계의 효율적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3) 마케팅 통한 홍보

마케팅을 통한 홍보방법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대행업체를 통한 홍보를 생각할 수 있다.

39) 조찬식, 전계논문, 10-11면 정리.

[표12] 마케팅 통한 홍보⁴⁰⁾

수 단	유 형
대중매체	신문, TV, 라디오, 소셜네트워크 등
대행업체	현수막 전시, 전단지 및 스티커 제작, 온라인 광고 등

첫째 대중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그 파급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방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관심대상들에게 적절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 체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전문적인 법제지식에 대한 홍보보다는 개괄적인 우리 법제 홍보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중매체 중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Social Graph)⁴¹⁾를 활용하는 방안은 유형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법제정보에 대한 법제홍보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중 Twitter유형⁴²⁾과 Facebook유형⁴³⁾의 선택의 문제를

40) 조찬식, 전계논문, 11-12면 정리.

41) 소셜 네트워크(영어: Social Network, Social Graph)는 웹 사이언스의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웹 상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node)가 되어 각 노드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tie)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구조를 말한다. 모든 노드들은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주체들이고, 타이(tie)는 각 노드들 간의 관계를 뜻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수많은 노드들과 그 노드들 사이의 무수히 다양한 관계들로 인해 계산론적으로 접근하기에 매우 복잡한 분야이다. 한 마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정보공유, 인맥관리, 자기표현 등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현재 인문, 경제,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주요 사이트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블로그, 마이스페이스, 포스퀘어 등이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C%85%9C_%EB%84%A4%ED%8A%B8%EC%9B%8C%ED%81%AC].

42)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수신자 그룹에 짧은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배포하는 데 이용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139590&v=44>].

43) 신규 가입자들은 신상정보를 작성하고 사진을 게재하며 기존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짜여져 있다. 월(Wall)이라는 명칭의 각 이용자 신상정보 페이지에서 이용

생각할 수 있다. 즉 Twitter유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많은 대형 광장에서 나홀로 짧게 외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기관에 일방적으로 우리 법제정보를 아주 간략히 전달할 수 있으나, 이를 수용하는 측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공허한 정보전달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Facebook유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이 많은 대형 광장에서 인적네트워크 관계를 기반으로 대화를 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기관 중에 홍보기관과 관련이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확대하여 홍보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유형은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되어 홍보의 확대를 신속히 하는 것이 Twitter유형 보다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법제홍보에 있어서는 Facebook유형을 활용하여 홍보의 효과를 올리는 방안과 Twitter유형을 활용하여 홍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의 2유형을 병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둘째, 대행업체를 통한 홍보는 대행업체의 전문성에 의해서 홍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홍보비용의 문제와 법제홍보기관의 전문성을 제고에 있어서는 대행업체를 통한 홍보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법제관련 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한 홍보

우리나라의 법제관련기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 및 연구 자체가 하나의 홍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법제관련 기관이 다른 대상국이나 국제기구에 행하는 정보전달 및 각종

자의 친구들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스테이투스(Status)라고 불리는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친구들의 현재 위치 정보나 상황을 알려준다. 또한 친구들의 근황 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뉴스 피드(News Feed) 등의 기능도 있다[<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153185>].

연수 및 자문 활동 등도 하나의 홍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법제관련 기관의 자체활동이 활성화 될수록 우리 법제에 대한 대상국에 대한 홍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으나, 특정 기관의 사업수행의 결과는 다른 관련 기관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

법제홍보시스템의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 있는 대상국 기관 등에 대한 홍보방안과 대상국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 있는 대상국 기관 등에 대한 홍보방안으로는 KOICA 및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법제 관련 기관의 연구 및 법학교육 등에 대한 성과 및 진행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 홍보하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홍보 체제를 통하여 관계 기관의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에 대한 협력 체제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대상국 및 국제기구 등에 대한 홍보방안으로는 단계별 확산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1단계로 국내외 정부기관과 MOU체결된 대상국 기관 및 KOICA와 연계된 대상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법제의 개관 및 최신 중요 이슈를 정리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이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2단계(확산단계)

1단계 대상국 및 대상기관에 대한 법제홍보 정착단계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외 공공기관과 MOU체결된 대상국 기관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공공기관과 MOU체결된 대상국

기관을 2단계로 한 것은 1단계의 정부기관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법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상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3단계(정착단계)

2단계 대상국 및 대상기관에 대한 법학교육 정착단계를 시도하면서, 국내외 민간기관 대상 수요조사에 따른 법제홍보 대상국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방위적인 우리나라 법제의 대상국에 대한 법제홍보가 시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제 3 절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홍보 방안

1. 중점홍보 기관 선정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대상국 및 대상기관에 대한 중점홍보 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 한국법제연구원과 MOU체결 된 기관 및 현재까지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대상국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홍보를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면 대상국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국제기구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홍보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한국법제연구원은 홍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기관간 연계를 통한 홍보, 마케팅 통한 홍보, 법제관련 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시스템의 활용하는 종합적인 홍

보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종전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제연구원의 활동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한 홍보와 연계하여 우리 법제를 홍보하는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터넷상의 전자소개서 등을 만들어 한국법제연구원의 홍보와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및 일부 부분에 우리 법제에 대한 내용 및 그 우수성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등을 게재하여 다른 대상국이나 국제기구 등에 배포하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다.

3.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 · 구축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3단계 홍보사업 시행 방안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 계	내 용
1단계	연구원 MOU체결 기관 및 국내외 정부기관 관련 대상국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연구원+KOICA 중심+국내외 정부기관)
2단계	1단계 대상국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1단계 대상국+1단계 연계 공공기관)
3단계	2단계 대상국을 중심으로, 연계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3단계 대상국+민간기관)

제 5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상응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적인 법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법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우리의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법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제교류 차원의 법학교육 및 국제적 홍보에 대한 체계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대상국에 대한 법학교육 및 법제홍보와 관련하여 ① 대상국의 범위 문제, ② 법학교육시스템의 부재, ③ 대상국을 위한 우리 법학교재의 부족, ④ 우리 법제에 대한 홍보 부족, ⑤ 법학교육에 대한 투자의 미비, ⑥ 법학교육 평가시스템의 미비, ⑦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제의 미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제교류차원의 교육체계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법제의 국제적 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라는 목표하에서 첫째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 둘째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 셋째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① 대상국 법제정보 오류 정비, ② 우리 법체계 전반에 대응하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에서는 ① 단기 교육 등 프로그램 구축·운영 및 기존 법학교육 관련 기관의 시스템 정보의 공동이용, ② 법학교육시스템을 통한 대상국에 대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국 단기 교육 및 연수 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과 관련하여서는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사업 시행, ② 주요대상국에 한국법센터(가칭)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제홍보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법제의 국제적 홍보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라는 목표하에서 첫째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 선정 및 접근성 강화, 둘째 홍보시스템 구축·운영, 셋째 대상국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중점 과제 법제 기초자료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대상국의 중점홍보 기관 선정 및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대상기관 선정시 ① 대상기관의 우리 법제에 대한 관심여부, ② 접근의 용이성 여부, ③ 홍보효과의 전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홍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①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② 기관간 연계를 통한 홍보, ③ 마케팅 통한 홍보, ④ 법제관련 기관 자체의 활동에 의한 홍보 등 복합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국 법제홍보시스템 업무영역 확산·구축과 관련하여서는 ① 1단계(기반정립단계)⇒ 2단계(확산단계)⇒ 3단계(정착단계)의 단계별 홍보사업 시행을 고려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 김유환, “제2절 일본”, 체제전환국 법제정비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박광동, 법제교류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법제연구원, 2010.
- 박소영, 교육ODA,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9.6.
- 에듀포넷(주), 교육훈련실무핸드북, 2004.
- 김유환, “체제전환국 법정비지원사업의 의미와 과제”, 아시아에서의 법 발전과 한국의 역할, 아시아법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2006.6.
- 김현수,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과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2차 워크숍 발표문(ppt자료), 2011. 12.16.
- 김진, “대한지적공사의 대상국 법학교육 및 홍보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2차 워크숍 발표문(ppt자료), 2011.12.16.
- 박광동, “韓國の法整備支援国に対する支援現況と課題”, 아시아 각국의 법정비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인재양성,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2009.7.
- 송상현, “세계적 관점에서 본 법학교육의 추세와 법학전문대학원-나라의 장래에 법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 서울대학교 법학 제 45권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6.

참 고 문 헌

윤혜란,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법학교육 및 홍보 현황 개관”, 한국 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1차 워크숍 발표문, 2011.12.9.

장민선, “대법원의 법학교육 및 홍보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에 관한 제 1차 워크숍 발표문, 2011.12.9.

조찬식, “공공도서관의 홍보에 관한 일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제4호, 한국비블리아학회, 2010.12.

II. 국외문헌

法教育研究会, 我が国における法教育の普及・発展を目指して, 法教育研究会, 2004.

AUSTRALIA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ADVANCING AUSTRALIAN INVESTMENT AND SERVICES EXPORTS 5 (2004), www.dfat.gov.au/trade/negotiations/us_fta/fact_sheets/Services.pdf.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Australia FTA Summary of the Agreement (July 15, 2004), http://www.ustr.gov/Trade_Agreements/Bilateral/Australia_FTA/US-Australia_FTA_Summary_of_the_Agreement.html.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POTENTIAL ECONOMY-WIDE AND SELECTED SECTORAL EFFECTS 99, 101 (May 2004), <http://hotdocs.usitc.gov/docs/pubs/2104f/pub3697.pdf>.

Ⅲ. 참고자료

<http://www.kanto-ba.org/sympo14/14-souron.htm>

http://ko.wikipedia.org/wiki/%EB%B2%95%ED%95%99_%EA%B5%90%EC%9C%A1

<http://www.scourt.go.kr/news/ExchangeViewAction.work?gubun=18&seqnum=62>

<http://www.coti.go.kr/front/glb/FrontGlb.do?method=psp&pgCd=300301000>

<http://www.coti.go.kr/front/glb/FrontGlb.do?method=interchange&pgCd=300302000>

<http://www.lrti.go.kr/icc/FrontHandler.do?method=introduction&menu=3>

<http://www.koica.go.kr/>

<http://news.nate.com/view/20111129n29253>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C%85%9C_%EB%84%A4%ED%8A%B8%EC%9B%8C%ED%81%AC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139590&v=44>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1153185>

참 고 자 료

[참고자료]

서울법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법강의 개설 관련 자료

□ 서울대 법대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법 강의 개요

○ 내 용

- 강좌명 : ‘한국법의 이해’(영어강의)
- 개설시기 : 2007년 2학기
- 담당교수 : 조국 교수, 권영준 교수, 이우영 교수
- 강의진행 :
 - 1)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각 전공교수가 설명한 뒤 수강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 2) 한국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견학 프로그램을 수업에 포함
 - 3) 법학 동문들을 통한 외부강사의 특강

□ 세부프로그램(강의계획서)

법 과 대 학 법학과 전공						
교과목 번호	강좌 번호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과	담당교수	
					직	성명
		Korean Law(I)	3	법학부		조국, 권영준, 이우영

참 고 자 료

<p>교과목 개요 및 주요 강의 내용</p>	<p>This course offers a basic understanding over the judicial system,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and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hree of the law school faculty members jointly teach their respective parts as a team during the semester. There is no requirement for the courses to be taken prior to this course or for the major of the students. Each week, some of the essential concepts of law, relevant law and legal system, cases, policies and practices are introduced and discussed. In further detail, the course proceeds along the following themes and topics: (i) a general overview of the judicial system; (ii) in the area of constitutional law, a history of the Constitution,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ii) in the area of civil law, distinctive features of the Korean civil law, particularly focusing on contracts and torts, and the civil procedures in Korea; and, (iv) in the area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basic principles and core issues of the Korean criminal law, and the structure and recent change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p>
<p>교재 및 참고서</p>	<p>Cases & Materials for Korean Law (1) ※ The main course reader includes various articles and other materials on each week's topics. Aside from the main course reader, handouts will be provided during each class to accommodate students' understanding.</p>
<p>성적 평가방법</p>	<p>Written Examinations*(Mid-term 30%, Final 40%) Term-paper (20%), Attendance (10%)</p>
<p>기타 참고 사항</p>	<p>The lecture and reading materials are offered in English. As well as lectures and discussions in the classroom, the class will also visi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s part of the curriculum. Also, some of the experts in relevant legal fields will be invited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expertise with the students.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will be primarily based upon mid-term and final examinations as well as the term paper (appx. 5-10 pages in length) to be turned in at the end of the semester. Attendance and participation in class discussions may also be considered for assessment and evaluation purposes.</p>

강의계획

- 제1주 (월요일 · 수요일 수업으로 제1주에는 강의시간이 없음)
- 제2주 (9.6.2007) 강좌소개 (Introduction) (조국, 권영준, 이우영)
- 제3주 (9.13.2007) 한국 사법제도 개관 (Overview of the Korean Judicial System) (권영준)
- 제4주 (9.20.2007) 대법원 견학 (A Visit to the Supreme Court) (권영준)
- 제5주 (9.27.2007) 한국헌법사 (A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한국 헌법상의 권력분립 (The Separation of Powers) / 헌법기관 (Th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이우영)
- 제6주 (10.4.2007) 헌법재판소 견학 (A visi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이우영)
- 제7주 (10. 11. 2007) 기본권과 헌법재판 (Fundamental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제8주 (10.18.2007) (중간시험) (Mid-term Examination)
- 제9주 (10.25.2007) 외부강사 특강 (Guest Speaker)
- 제10주 (11.1.2007)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 -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Distinctive Features of Korean Civil Law - Focusing on Contracts and Torts) (권영준)
- 제11주 (11.8.2007)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요 (Introduction to the Civil Procedures of Korea)
- 제12주 (11.15.2007) 외부강사 특강 (Guest Speaker)
- 제13주 (11.22.2007)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f Korean Criminal Law) (조국)
- 제14주 (11.29.2007) 한국 형법의 주요쟁점 (Critical Issues in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조국)
- 제15주 (12.6.2007) (학기말시험) (Final Examination)